

제346회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1월17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정치발전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상정된 안건

- 1. 정치발전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1

(10시11분 개의)

○위원장 金世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불체포특권 개선 등 9개 의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국회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그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11월 11일에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국회법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를 목표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2소위가 방금 끝난 관계로 제1소위와 제3소위로부터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받고 논의를 한 후에 방금 회의를 마친 제2소위의 심사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정치발전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10시12분)

○위원장 金世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발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배덕광 제1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배덕광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세비 제도개선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의원 세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첫째, 국회의원을 전문 직업인으로 보아 세비를 기존 실비 정산 방식의 수당 개념에서 보수 개념으로 변경하고, 둘째 기존에 비과세로 분류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하며, 셋째 독립적인 가칭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 세비 제도의 개선원칙을 합의하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의 보수는 2012년 이후 내년까지 5년간 동결됨에 따라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 약 10% 수준의 감소효과가 나타났고, 이번 개선안을 통해 비과세 대상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편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5% 수준의 삭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첫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윤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둘째 윤리심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던 것을 학계·법조

계·시민단체 등의 외부 추천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또는 직무수행경비로 전환하는 등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제3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제3소위 위원장 황주홍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정감사 제도 및 소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감사를 분리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둘째 국정감사 증인 요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일반증인의 출석요구를 신청할 때에는 성명, 일시, 신문요지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간사를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셋째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소관별·분야별로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합동감사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합의사항 외에 소위원회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상설소위원회의 전면 또는 단계적 도입 문제 및 의안 자동상정제도의 소위원회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분들은 저한테 알려 주시는 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2소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입법안까지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유승희 제2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승희**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3차 회의와 금일 4차 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권자와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부적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말·전화·명함 배부 등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도록 하고,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인터넷·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와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체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도록 해서 정치신인들의 알릴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수막·신문광고·방송광고 등에 대한 현행 방법규제를 비용규제로 전환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선거사무소·선거벽보 등 선거운동방법의 성격상 후보자 등만 가능한 방법, 연극·영화 등 정치적 표현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거나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의 원칙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방안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들으셨는데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제2소위원회에서는 합의사항이 심사결과 보고한 그대로입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합의사항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소위 차원에서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현행 유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 확정장치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부당하게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옥내에서 예를 들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꼭 인사를 해야 될 경우에 주어진 마이크로 인사말을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의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규제를 부당하게, 상식에 좀 어긋나는 수준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의 해석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보충발언 해 주십시오.

○위원장 金世淵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선거법 91조에 보면 ‘후보자 등 선거운동 기간 중에 확정장치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인이 사용하는 확정장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비후보 때는 옷을 입고 어디 옥내에 들어가면, 무슨 집회가 있으면 후보자들에게 마이크를 줍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를 들고 인사를 했다 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리게 되면 아마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규제를 너무나 규제답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확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또 옥외에서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예비후보 기간 동안에 실내에서 어떤 집회가 있을 때 마이크를 썼을 때는 자기가 그 마이크를 들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정치 표현의 자유가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규제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앞의 것하고 뒤의 것이 좀 혼돈이 되어서 91조를 보고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별도의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金世淵 원혜영 위원님.

○원혜영 위원 방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에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실내외 구별 그것도 불필요합니다.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얼마든지 기공식이나 무슨 행사 있을 수 있고,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세세한 규정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검찰 경찰 선관위 쫓아다니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에 대한 문호는 크게 텃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일단 2소위에서 그 부분을 아직 좀 더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오늘 주신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머지는 2소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강화 문제와 같은 경우도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이야기 했던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또는 직무수행경비로 전환해서 분명하게, 묻지마의 경비나 예산이 아니라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는, 만일 그것이 아예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넣자는 부분이 이 앞전에 과연 우리 정발특위에서 의견을 내는 부분으로 가능한 것인지, 앞전에는 운영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金世淵 정발특위 위원장이 유권해석기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현재 입법권을 가지고 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 법안도 운영위에서 결국 논의가 바로 되고 그다음에 다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항을 논의해서 운영위에 넘기면 운영위 차원에서 또 입법심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김재경 위원 우리 유승희 소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런 취지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오신 분들, 그냥 확정장치로 단순히 인사나 덕담 정도를 했는데 그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거기서 지지 호소라든지 선거운동 개념의 말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우리 후보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냥 노래방 가서 마이크 준다고 노래 부르고 인사했다고 이게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위원장 金世淵 말씀 마치셨습니까?
김재경 위원님, 발언시간 중인데 말씀 마치신 겁니까?

○김재경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예비후보 선거기간 동안은 본인이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하느냐 안 잡고 하느냐를 가지고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다수 그것으로 검찰에, 선관위에서 고발당하면 다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노래자랑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마이크를 잡으면 예비후보니까 당연히 지지 호소 발언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구속을 해 버리면 법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개념은 없애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마이크 확장장치를 사용한다는 게, 자기가 사 가지고 계속 떠들면, 후보자가 많으면 그건 말이 안 되고 동네에서 시끄럽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떤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쬐었을 때 후보가 행사장 분위기에 따라서 내 지지 연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그냥 인사만 할 때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것은 또 문제가……

○위원장 金世淵 김재경 위원님.

○김재경 위원 확 풀어놓아도 요새 그렇게 하면 표가 더 떨어져 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그럴 사람은 없기는 없을 텐데, 그 경계선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우리 박재호 위원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는 예비후보 경험이 별로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박재호 위원님 그리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경계선을 두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나 유권자나 비선거권자 다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자기가 후보임을 표시하는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선거운동의 시작인데 어느 선까지 지지하는 부분들을 발언할

수 있고, 지지 안 하고 그냥 덕담만 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대단히 유권해석의 오남용을 부를 수 있고 혼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불필요한 경계선보다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입법의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취지로 정발특위, 원래의 정치발전특위 구성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는 부분이었던면 부대의견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그 문제점은 대단히 심각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국회가 모범을 보여서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투명한 국회를 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한 정발특위에서는 업무추진비 또는 직무수행경비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관을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의결해서 그 의견을 전달해야지, 그냥 단순히 ‘이런 의견도 있었다’ 이런 것은 정발특위의 본분을 약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첨언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아까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한 결과 이것이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예산편성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성기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면 행사장에 축사를 요청받아서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축사의 장소이지 자기 개인의 선거에 관해서 지지발언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나 주민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자기를 지지해 달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축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축사요청이 있으면 그 축사, 그 행사에 맞게 축사를 해야지 저를 지지해 달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든 그 행사하고 좀 어긋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원혜영 위원님 먼저 신청을……

○원혜영 위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것에 관련된 말씀은……

○위원장 金世淵 관련 주제면 관련 주제부터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의견은 아닌데요. 일단 당연히 축사를 원하는 자리에서 축사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 자기 표를 깎아먹는 행위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예비후보자 시절 때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행사장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지 호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의 노래교실을 가면 거기는 마이크시설이 다 돼 있고 노래를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 지지 호소를 가서 그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축사라든지 행사장의 기공식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저는 누구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분들이 또 노래 한 곡도 하라고 합니다. 혹은 관광버스에 또 올라타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축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배덕광 위원님.

○배덕광 위원 지금 저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구청장을 3선이나 하고 국회의원에 또 출마를 했을 때 노래자랑교실에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초청도 받고, 또 당원들이 ‘거기에는 반드시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많이 찾아다니는데, 마이크를 줄 수 없는 사정을 주최자 측에서 나한테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부르라고 그래서 부른 경우가 있는데, 왜 마이크를 안 주느냐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후보자들이 너무 난립했을 경우에, 주최자들의 노래시간이 허용된 것이 1시간 밖에 안 되는데 후보자들이 너무 난립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고 그러면 그 행사의 취지가 너무 바래지니까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법으로 이걸 제한해 놨는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어떤지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金世淵 선관위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그 입법취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제한적인 범위, 면대면 아니면 거리에서 지나가는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십사, 아마 그런 취지의 차원에서 확장장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법은 규정을 해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비후보자가 어떤 실내에서 지지호소를 할 때 확장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규정만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거법을 단속할 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사용이 조금 제한이, 규제가 완화가 됐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혹시 이 주제에 관한 토론입니까?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확성기 사용하는 문제는 그렇지만, 지지한다거나 이런, 그 취지에 맞게 말을 하는 것으로 가야지, 거기서 내 지지를 한다거나 다른 걸 하다 보면…… 이게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후보자들이 죽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올라가서 그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유세장이 돼 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제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金世淵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마는 지금 유권자가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보다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면, 다 가보시겠지만 경로당에 갔을 때 마이크를 주면, 노래자랑 있는 데서 하면 할머니들 이런 이야기하고 지지호소하고, 또 어떤 곳은 가면 간단하게 끝내야 되고, 이것은 후보자가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규제가 오히려 더 규제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 스스로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발목을 잡고, 또 선관위나 검찰에 괜히

빌미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가 잘못됐고 또 옛날 방식에서 좀 벗어나려면 이것을 좀 풀고, 또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선관위에서 계속 조사받으러 와라, 뭐 해라, 상대방에서 사진만 한 장 찍어 가지고 올리면 선관위에 가야 돼요. 이게 과열되면, 이것은 너무 규제 위주다, 그래서 그것은 선관위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2소위에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우리 전체회의에서 토론한 결과는 이견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2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라는 배포된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시점에서 유인물 제5페이지와 6페이지에 각각 참고로 기록된 표가 2개 있는데 합의사항 중에서 선거운동 자유확대 개선사항이 있고 현행유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으셨으면, 위원님들, 지금 한번 죽 살펴봐주시고 이대로 우리 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 오늘 결정해도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회의 마칠 때 정리하겠습니다.

이외에 또 논의하실 사항들 토론 있으면 해 주십시오.

원혜영 위원님.

○원혜영 위원 2소위 사안?

○위원장 金世淵 1·2·3소위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전체요?

○위원장 金世淵 예.

○원혜영 위원 방금 논의가 됐던 마이크 사용 문제는 크게 봐서는 말은 풀고 돈은 뭉자라는 취지, 이렇게 굵고 단순하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때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평상시에도 사전선거, 그러니까 사전선거운동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때는 후보자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

는 기회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후보자가 알리는 게 뺄뺄 웃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 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와서 인사말 하고 그러는 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처럼 정말 진짜 후보자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라는 아주 우월적인 기회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내 업적이나 진행 추진 상황을 알릴 수가 있는데 현역이 아닌 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정치발전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배덕광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게 지난번에 제1소위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방에 급하게 내려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 소위에서 미리 논의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못 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발전특위와 아울러서 윤리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지난 18대·19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정리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윤리 18대, 19대만 훑었습니다.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소된 징계 건에 대해서 수십 건의 심의와 결정, 그러니까 대부분은 결정을 안 했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쨌든 사안이 안 된다고 그냥 기각을 시켰고 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만 수십 건이 넘습니다.

제일 낮은 기준이 ‘공개 경고’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그 의원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공개 경고하는 겁니다. 그다음이 ‘공개 사과’를 지시해서 본회의장에서 그 의원이 지적받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석 정지’입니다. 그다음이 ‘제명’입니다.

수십 건인데 그중에 18대에 딱 1건, 19대에 딱 1건, 제명 건만 윤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고 그 결과 제명 처분이 각각 1건씩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국회의

위촉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나름대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적극적이지 않게 아주 소극적으로 심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공개 경고를 하거나 사과를 지시하거나 출석 정지를 시키거나 제명을 시켜야 된다고 의결한 사항들을 우리 윤리위원회가 1건도…… 아, 말씀드린 대로 각각 제명 건, 도저히 국민적 지탄이 엄청나서 회피할 수 없었던 사건 빼 놓고는 전부 다 목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현재 우리 윤리 문제에 대해 국회가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다루는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성,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윤리위원회에서—현재 제도상으로는 윤리위원회입니다—반드시 기한을 정해서 다룰 수 있게…… 다뤄서 기각시키든 채택을 하든 하는 것은 거기서 논의할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것을 시한을 정하지 않고 미뤄 가지고 결국 자연 기각되게 함으로써 국회가 동료 감싸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 이렇게 입법이 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떤 판단, 판정을 해서 윤리위원회에 올리면 윤리위원회가 2개월 안에 그것을 결정하면 채택을 하든 기각을 하든, 이 안은 현재 국회의장이 구성했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 결정·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택하면, 국회의원들에 관한 우리 국회에서 스스로 만든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윤리위원회에 의해서 무책임하게 방기되지 않고 책임 있게 처리되는 장치만 만들면 저는 국회의 풍속도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처럼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료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 최종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공개사과를 요구받고 단상에 섰을 때 그리고 또 공개경고를 의장으로부터 받을 때 이것이 주는 충격과 자정 효과는 제명시키는 것…… 제명이야말로 정말 재수 없게 걸려서 어떤 사람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언동 하나 하나가 이런 기준에 현저하게 어긋났을 때는 이런 조치를 받는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의 이것에 대

한 인식과 각성은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우리 정치발전의 중요 과제로 다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金世淵 잘 알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윤리특위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1소위 논의 내용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문’이라는 명칭을 제외하고 ‘윤리심사위원회’로 변경해서 독립성, 객관성을 구성 단계에서 강화해서 보다 실질적인 논의와 그리고 윤리특위에서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결론을 사실상 그대로 채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우리 1·2·3소위 논의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된 점들을 다시 한번 쪽 훑어 보니까 1소위에서는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합의 사항은 오늘 심사결과 보고에는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특위가 연말까지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고 오늘 전체회의 이후에 한 차례, 많아도 두 차례 정도, 앞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 예산안 처리라든가 또 법안 처리 등의 본회의나 각 상임위 일정을 고려할 때 많아도 두 차례 정도 잡혀 있다고 본다면 오늘 전체회의 이후에 각 소위에서는 지금까지 논의 이후에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은 조속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소위에 논의가 되었던 세비 제도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 오늘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소위 합의를 빨리 이루어 주셔야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해서는 방금 원혜영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고요. 그런 토론이 있었고, 지금 이석하셨습니다만 윤소하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계신데 1소위 논의 내용대로 업무추진비 또는 직무수행경비로 특수활동비를 전환하자 하는 의견에 우리 특위 차원에서 위원님들 다 합의를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아직 윤소하 위원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2소위 논의 사항들에 대해서 2소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선거운동 방법, 말·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 자동동보통신 이용한 문자메시지, 명함, 대담·토론회, 또 그 주체가

각 단체, 언론기관,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현수막·신문광고·방송광고 등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논의 안 해 주신 부분들은 합의해 주신 거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게 부지불식간에 그냥 합의가 되었다고 나중에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기회가 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소위에는 국정감사 제도 개선 여기에 분리 실시 방안, 증인 요구 투명성·책임성 강화 방안, 국정감사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동의해 주시는지, 또 국정감사 제도 개선, 소위원회 제도 개선의 추후 논의에 대해서 주실 의견 있으면 마지막으로 토론하실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제2소위원장 유승희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정치발전특위 차원에서 정치발전을 기하고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성,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선거운동 기간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이견이 많아서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중장기 과제 내지는 다시 한번 정도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그야말로 단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불합리한 부분부터, 일단은 선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 거의 그대로 지금 일단 잠정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허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놓친 부분, 예를 들면 확정 장치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정도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제1소위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19대에 여성가족위원장을 했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내대표와도 상의를 했고 이 특수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그것을 다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 혼자 그것을 원내대표 간의 협의 없

이, 합의 없이 진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적어도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투명하게 집행하는 그 원칙만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또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굉장히 불투명하게…… 지방자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부터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도는 정치발전특위에서 의견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그러면 아마 다음 전체회의가 정기회 일정상 또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져 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일정상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수 있다고 보시고, 그 이후에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희망합니다만 다음 전체회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보시고 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의를 해서 다음 전체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소하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개선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전달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직 1소위 합의 사항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의 사항 정리하겠습니다.

1소위는 합의 사항이 없었고요. 2소위의 합의 사항 표에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유인물 5·6페이지에 있고요. 3소위 합의 사항이 국정감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 없으시면 이렇게 확정 지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선관위에 잠깐 질문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다른 내용은 저도 개인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틀이 바뀐 것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 게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예.

○**위원장 金世淵** 이게 선거 기간이 있고 그중에 선거일이 포함되고 그 앞은 선거운동 기간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예.

○**위원장 金世淵** 이 칸막이가 없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 소위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소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는데, 해외에서는 선거 당일 날 선거운동이 허용된 것이 보편적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예, 저희가 지금 허용하는 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거고요, 해외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당일 날 선거운동을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다 하지요.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선거 당일 날 다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당일 날 지지 호소는 안 되지만 선거운동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도 원래 금지돼 있다가 최근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운동 자유 확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봤고 선관위원회에서도…… 선관위원회안입니다, 이것 자체가.

○**위원장 金世淵** 그러니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지금 정당후보자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하고 선거운동하고 구분이 사실상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사전투표일은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허용을 하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자동동보통신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그러니까 법에 보면 20인 이상을 보낼 때 휴대전화기 아닌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가지고 동시에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원장 金世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각 소위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 중에서 합의 사항은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 중 일부 논의 내용을 감안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소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법 개정 사항들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동 발의하는 형식으로 하여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 병 원	김 세 연	김 재 경	박 덕 흡
박 용 진	박 재 호	배 덕 광	원 혜 영
유 승 희	윤 소 하	이 철 희	이 혜 훈
전 희 경	황 주 흥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송 병 철
입 법 심 의 관	박 태 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선 거 정 책 실 장	김 신 기
-------------	-------